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의 증가와 보험상품

김동겸 수석연구원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버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신체폭력보다 심각해 우울증,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함. 주요국에서는 이를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 제정 및 예방정책 등을 마련함. 한편, 해외 보험회사에서는 사이버 폭력 위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해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¹⁾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2018)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4명 중 1명(23.1%)은 최근 6개월 간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의 경험하였으며, 특히, 20~30대의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남
 - 사이버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은 언어폭력(15.0%), 성폭력(11.9%),²⁾ 스토킹(11.8%), 명예훼손(8.7%), 신상정보 유출(7.95), 따돌림(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 연령대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피해경험률	28.4	27.2	19.2	19.3	23.1
가해경험률	23.1	24.4	17.5	10.1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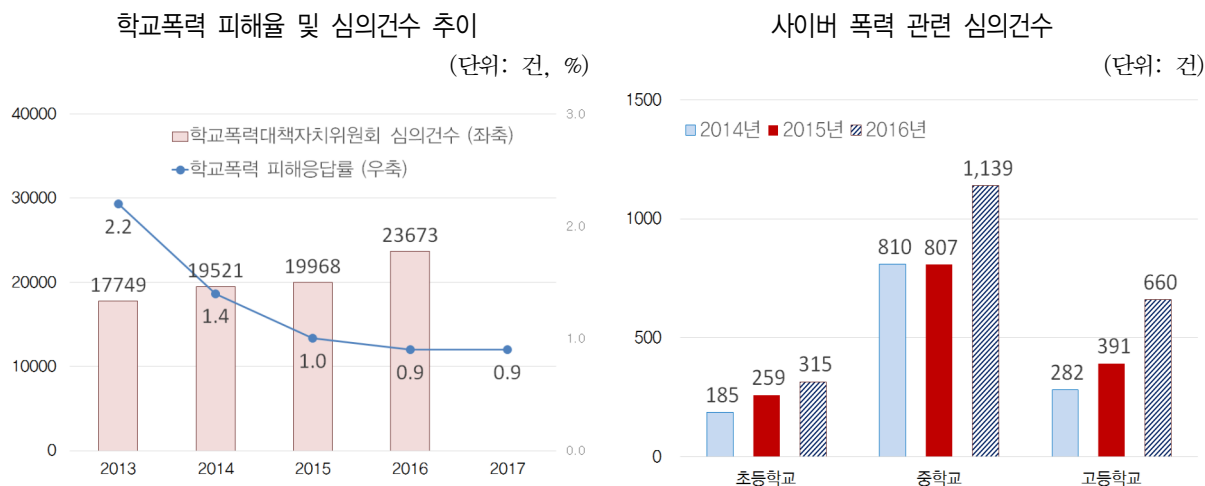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2. 12), “2017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따돌림·갈취, 신상정보 유출 등 인터넷, 휴대전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3)
- 2)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묘사 또는 성적 비하발언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 동영상,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함

■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급증³⁾에 따라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은 저연령화되어,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그림 1〉 참조)

- 2012년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⁴⁾ 발표 이후 학교폭력은 크게 감소하여, 학교폭력 피해·가해응답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기준 0.9%(3만 7천명) 수준임
 -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⁵⁾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과 사건화된 학교폭력사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중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유형의 심의건수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이버 폭력 관련 심의건수는 스마트폰 과의존위험율⁶⁾이 높은 중학교(1139건)에서 가장 많음
 - 한편, 사이버 폭력 관련 심의건수 증가율(2014~2016년)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음

〈그림 1〉 사이버 폭력 가해 및 피해경향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7. 7. 11),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박경미 의원실 보도자료(2017. 10. 2)

■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신체폭력보다 더 심각해 우울증 또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함

- 3) 2017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의 스마트폰보유율은 각각 74.2%, 92.0%, 93.5%임(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한편,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이용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7.6%이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91.7%에 이르고 있음
- 4) 관계부처합동(2012. 2. 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5) 교육부 보도자료(2017. 7. 11),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6)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중학생(34.7%), 고등학생(29.5%), 초등학생(23.6%) 순임(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8), “2017 청소년 통계”)

- 한국정보화진흥원(2016)⁷⁾에 따르면 학교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25.2%는 자살·자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의 경우, 10대 청소년의 자살은 교통사고나 약물 과다복용에 이어 10대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며, 왕따(Bullying)와 사이버 폭력 등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⁸⁾
- 주요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은 48개주가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이나 온라인상의 괴롭힘(Online Harassment)을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44개 주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⁹⁾
 - 한편, 호주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관련법 제정을 통해 민관 합동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 폭력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음¹⁰⁾
- 한편, 해외 민영보험회사는 사이버 폭력에 따른 피해 보장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¹¹⁾
- 예를 들어, Cuubb 社 의 경우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미국,¹²⁾ 캐나다,¹³⁾ 영국 등에서 출시하였음
 - 영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고액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 폭력으로 일주일 이상의 근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소득상실액이나 상담비용을 £50,000까지 보상함¹⁴⁾ **kiri**

7) 류석상 외(2016), 『사이버 폭력 유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8) Benjamin Shain(2016), “Suicide an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t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9)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https://cyberbullying.org/bullying-laws>)

10) 이승현(2017),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 CIP Society(2017), “Cyberbullying – AN INSURANCE RESPONSE TO HELP CYBERBULLYING VICTIMS”

12) Chubb adds cyber bullying coverage to U.S. home insurance policies

13) Global News(2016. 06. 14), “Insurance company bringing cyberbullying coverage to Canada for first time”

14) Telegraph(2015. 12. 09), “‘Troll insurance’ to cover the cost of internet bullying”